

—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(안) —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21세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노인 여가 공간 확충으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.

3. 주요내용

- 취득재산

차 번	차 례	필수	면적(m ²)	소유자	추정가액(천원)	비고
계		8	4,030		487,630	
원평동1004-2	도로	1	100	국	12,100	
원평동995-9	구거	1	150	국	18,150	
원평동466-2외	답	6	3,780	원평동 이병욱외 2	457,380	

4. 참고사항

- 지방재정법 제77조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

5. 검토의견

- 노인복지증진 확대를 위해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임.
- 기존 노인회복지회 부지 3필지 9,202㎡에 장기적인 계획으로 종합 복지회관 건립을 위해 추가로 8필지 4,030㎡에 추정가 487,630천원에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안임.
- 기존 인접시설인 민속관과 산책로, 게이트볼장 등을 활용하되 추가 부지를 확보하여 장기적인 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확보 계획안임.